

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예고

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1월 22일

용 인 시 의 회 의 장



1. 조례안 예고 현황

구 분	조 례 명	발의자(제출자)
총 계	일부개정 1건	
1	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이은경, 장정순, 김상수, 남홍숙, 안희경, 유향금, 이선화 의원 대표 발의자 : 이은경 의원

2. 조례안 : “별첨 참조”

3. 의견제출

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1월 29일(화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보내실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
용인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

전화)031-324-2538 전자우편) aar2005@korea.kr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